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제안연월일 : 2009년 12. 2.

제안자 : 이기동 의원 외 7인

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단지기술진흥재단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제11조로 한다.

제5조(임원) 임원은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<u>제5조~제10조</u></p>	<p><u>제5조(임원) 임원은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</u></p> <p><u>제6조~제11조</u></p>